

2015.7.15.(수) 10:00  
안산시의회 본회의장

제22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시 정 질 문 답 변 서

## [서면답변]

< 서면 질문 : 1의원 1건 >

【서 면 답 변】  
○ 이민근 의원 : 1건



안 산 시

□ 이민근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법령에 근거한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사전절차 이행 방법 개선
  -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투자심사제도, 용역과제심의 등 무분별한 사업 수행을 막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방법 개선에 대한 답변 요구
- 우리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과 일정에 맞춰 매년 10월 말에 정기적으로 심의 확정 하고 있으며,
-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으나 국고보조사업 추가 등 추가경정예산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다음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억 이상의 투자사업 등에 대하여도 「지방 재정사업심사규칙」에 의거 각 부서로 하여금 안건을 제출토록하여 매년 3회이상 안산시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 편성 전 심사를 받지 않거나 사후에 심사받는 등 지방 재정법상 절차를 위반하는 사업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러한 현상은 ①특별조정교부금과 같은 국도비 보조금이 급박하게 이뤄진 경우나 ②본 사업 시행전 설계용역비나 공고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 투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전에 예산을 편성하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 따라서, 향후에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기투자심사를 년4회 운영하고, 이와 별도로 사업 수행이 급박한 경우 수시심사를 개최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 부서 담당자들에게 사전 절차를 준수하도록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여 미이행 사업은 편성에서 배제하도록 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2004년 6월 제정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1천만원 이상 연구·학술 용역과 3천만원 이상 기술 용역, 공사설계용역·사업집행용역 등 광범위한 용역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공사설계용역과 기술용역, 단순 시설관리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등의 관련 법령 규정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하여 용역심사에서 제외하고 실제로는 학술용역과 일부 기술용역만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의 구분이 애매하고 법령규정의 해석차이로 심사 대상 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심의를 회피 또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 부재로 용역이 남발될 우려가 있음도 사실입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주된 내용으로 일상감사를 통해 심사를 받는 건설 기술용역과 조례에 따라 심의 및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절차가 규정된 시설물관리용역은 심의 대상에서 삭제하고 학술연구용역을 심의하는 것으로 심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또한 사전 실무 심사반을 운영하여 용역과제의 유사증복에 대한 사전 검증을 철저히 하고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위원 수를 확충하는 등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도록 할 것이며,
- 용역 결과물을 외부 시스템(PRISM)과 안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용역실명제를 도입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여 사후관리 부실로 결과물이 사장되는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조례를 개정하고 그에 따른 용역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 민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